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555

발의연월일: 2024. 7. 10.

발 의 자:임오경·한병도·양문석

이기헌 • 박수현 • 민형배

강유정 · 조계원 · 김윤덕

이용우 의원(10인)

제안이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에게 등 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려는 자의 등록 관청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구글 등 해외사업자 중 일부는 실제로는 국내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다는 사유로 청소년보호 책임자 지정·공개,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및 기사배열 책임자 공개 등「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사무소를 외국에 두고 국내에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

로 발행하려는 자가 국내 사무소·영업소·업무담당자가 있는 경우해당 소재지 또는 주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없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국내 주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주사무소를 외국에 두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등록사항으로 국내 주된 업무담당자 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국내 사무소·영업소 소재지를 추가하도록함(안 제9조제1항).
- 나. 안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국내 사무소·영업소 소재지나 업무담당자의 주소 또는 국내대리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9조제6항).
- 다. 국내에 사무소·영업소나 업무담당자가 없는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국내대리인의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9조의3).
- 라.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조의4 및 제39조제2항).

법률 제 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9호를 각각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국내 주된 업무담당자 또는 국내대리 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주사무소를 외국에 두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9.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국내 사무소·영업소 소재지(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주사무소를 외국에 두고 국내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가 주사무소를 외국에 두고 인터 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이하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라 한다)인 경우는 국내 사무소·영업소 소재지나 업무담당자의 주소 또는 국내에 사무소·영업소나 업무담당자가 없으면제9조의3에 따른 국내대리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의3 및 제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3(국내대리인의 지정 등) ① 국내에 사무소·영업소나 업무담 당자가 없는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 1. 제9조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등록
 - 2. 제9조의4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
 -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부여된 의무 및 준수사항 등의 이행
 -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사무소·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제9조의4(자료의 제출 등)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

다.

-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 2.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9조제2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9조의4를 위반하여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등록) ① 신문을 발행하거	제9조(등록) ①
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	
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	
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	
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	
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	
하거나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	
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7.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국내 주된 업무담당자 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생년월
	일·주소(인터넷뉴스서비스사

현 행	개 정 안
	업자가 주사무소를 외국에
	두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u>7</u> . (생 략)	<u>8</u> . (현행 제7호와 같음)
<u><신 설></u>	9.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국내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주사무소를 외국에 두고 국
	<u>내 사무소·영업소가 있는</u>
	경우에 한정한다)
<u>8</u> . ~ <u>11</u> . (생 략)	<u>10</u> . ~ <u>13</u> . (현행 제8호부터 제
	11호까지와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⑥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
	는 자가 주사무소를 외국에 두
	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
	으로 발행하려는 자(이하 "해
	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라
	한다)인 경우는 국내 사무소ㆍ
	영업소 소재지나 업무담당자의
	<u>주소 또는 국내에 사무소·영</u>
	업소나 업무담당자가 없으면
	제9조의3에 따른 국내대리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
	등록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9조의3(국내대리인의 지정 등)

현 행	개 정 안
	① 국내에 사무소・영업소나
	업무담당자가 없는 해외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지
	정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인터넷뉴스서
	비스사업자의 등록
	2. 제9조의4에 따른 관계 물품
	•서류 등의 제출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뉴스서
	비스사업자에게 부여된 의무
	및 준수사항 등의 이행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
	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의 성명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u>경우에는 사무소·영업소 소</u>
	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
	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외인터넷뉴스서비
	스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
	<u>로 본다.</u>
<u><신 설></u>	제9조의4(자료의 제출 등) 시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터
	<u>넷뉴스서비스사업자(국내대리</u>
	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u>알게 된 경우</u>
	2.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
	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
	<u>우</u>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제39조(과태료) ① (생 략)	제3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2. 제9조의4를 위반하여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u>자</u>
<u>2</u> . ∼ <u>9</u> . (생 략)	<u>3</u> . ∼ <u>10</u> . (현행 제2호부터 제9
	호까지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